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 의 자 : 정혜경・김종민・이용우
윤종오・전종덕・정을호
백승아・용혜인・김 윤
임미애・고민정・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

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을 “기여하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및 조리사

나.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제공될”을 “제공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될”로, “발전을”을 “발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4.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단,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식품의 안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는”을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리실무사 등의 배치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제7조제1항의 영양교사·조리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7조의3(배치기준) ① 제7조제1항·제7조의2에 따른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서 급식인원 수, 급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량 경감에 필요

한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준 협의회를 두어 학교별 배치 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③ 배치기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을 “향상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보완과 확충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급식의”를 “그 밖에 학교급식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의”를 “제12조제3항의”로 한다.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기여하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및 조리사 나.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근무장소로 하는 사람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제공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이 보장될---------- ---------- ---------- ---------- ----------발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
<신 설>	4.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단, 학부모 및 학

	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생략)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정하되, 식품의 안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

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단서 삭제>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조리실무사 등의 배치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제7조제1항의 영양교사·조리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 설>	제7조의3(배치기준) ① 제7조제1항·제7조의2에 따른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서 급식인원 수, 급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량 경감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종사

	자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준 협의회를 두어 학교별 배치 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③ 배치기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향상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보완과 확충을---------- ---------- ----------.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생략) <신 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③ 그 밖에 학교급식의-------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1. ----------제12조제3항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